

##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 희 곤	소속위원회	총무위원회
질문대상자	구 청 장		

○ 제105회 제1차 정례회시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보완 서면 질문사항임

▷ 괴정1동에 1244번지에 위치하는 회화나무는 1982.11.2일 타지역 4개소(인천신현동,당진,월성,함안)와 함께 천연기념물 316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 생육공간이 침범당하고 보호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같이 지정된 4개소는 현재도 기념물로 관리중에 있음

▷ 아울러 회화나무는 「괴정」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 구의 향후 보존계획과 천연기념물로 재 지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지난번 구정질문시 낙동로변(괴정1동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회화나무의 보호유지를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매입 후 도심지역 소공원으로 조성바라는 구정질문건(건의)에 대하여 그 당시 답변 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질문의원명	김 회 곤	질문일시	2003. 1. 20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질의주요내용	지난 번 구정질문시 낙동로변(괴정1동 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회화나무의 보호유지를 위하여 주변 토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매입 후 도심지역 소공원으로 조성바라는 구정질문건(건의)에 대하여 그 당시 답변 후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 괴정1동 회화나무 주변 소공원 조성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화나무 보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병충해 방제를 매년2회 정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근린공원(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지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상면적이 1만㎡이상이어야 하므로 해당지역은 공원법상의 공원조성대상지로는 부적합하므로 법상의 공원이 아닌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서 조성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일반 소공원으로 지정 개발시 부지확보 범위에 대하여는 인근사유지 괴정1동 904번지 박종맹 등 5필지 4명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감정 추정가 등을 비교분석한 후 소요예산 확보문제와 병행하여 적정 범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넷째, 인근지역 일부의 소공원화는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1차로 부산시에서 2003년 푸른부산가꾸기 추가사업(추경 등) 추진시 건의 하는 방안과 2차로 2004년 부산시의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 계획시 건의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구청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질문의원명	김 희 곤	질문일시	2003. 1. 20
소관부서	문화공보과		
질문주요내용	<p>괴정1동 1244번지에 위치하는 회화나무와 관련 구의 향후 보존계획과 천연기념물로 재지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가?</p>		

○ 괴정1동 소재 회화나무는 '82. 11. 14 천연기념물 제316호로 지정되었으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고 주택가에 위치하여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다는 문화재관리국의 현지조사에 의거 '93. 4. 12일 문화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우리구의 회화나무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자 '93. 3. 26일 회화나무가 우리구의 구목임을 감안 타 장소에 있는 팔정자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대체지정 해줄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요청하였으나 지정되지 못하고 현재는 부산시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식물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회화나무가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제43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념물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500m 초과)의 건설공사시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민불편 등 예상 문제점과 대책을 판단하여 문화재 지정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